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기업채권 발행과정에서의 신용 강화

지난 10월 9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기업채권 발행과정에서의 신용 강화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지에 의하면 채권발행을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신용서비스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의 신용기록 또는 신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용기록 또는 신용보고서의 발행은 성급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담당자가 직접 해당 신용서비스기관에 요청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필요 시 채권발행기업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으나 채권발행기업 또는 주간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채권발행기업의 신용은 직전 3년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상황에 의지하여 평가하였지만, 이 규정의 발표로 신용서비스기관에서 작성한 신용보고도 채권발행 관련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채권발행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신용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상업신용시스템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작단계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신용서비스기관의 신용보고만으로는 이 통지에서 정한 채권발행기업의 정확한 신용기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지분을 이용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규정 발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외상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지분을 출자수단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소재지 성급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출자로 이용되는 지분은 소유권에 다툼이 없어야 하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지분은 출자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 출자로 이용되는 지분 소재기업(이하 "지분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체납한 경우
- 2) 출자로 이용되는 지분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 3) 출자로 이용될 지분이 법에 의해 동결된 경우
- 4) 지분기업의 정관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 5) 직전 연도 외상투자기업 연도검사 불참 또는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
- 6) 부

동산기업, 외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지분)투자기업의 지분 7)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지분을 양도하여야 하지만 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 외 출자로 이용되는 지분에 대하여 반드시 적법하게 설립된 중국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기업의 모든 주주의 지분출자 금액과 기타 현물출자 금액의 합계는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결산보증금제도 통일

지난해 11월 13일, 「증권결산보증금 관리방법」이 발표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는 서로 다른 결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즉 상해증권거래소는 '청산결산거래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심천증권거래소는 '결산상호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2가지 제도는 명칭, 근거, 비용수취기준 등 방면에서 상이하여 결산 당사자의 관리원가를 증가시키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위 규정은 위 증권거래소들의 상이한 보증금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위 규정 시행 후 심천의 권리증서이행보증금, ETF구매이행보증금, 상해의 권리증서가격차액담보금 등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중국증권등록결산회사에서 통일적으로 관련 계좌를 말소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위 규정의 시행으로 결산보증금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자금의 이용률과 수익률도 대응하여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